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59

제출연월일: 2007. 6.2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주요 물류정책 심의에 있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중 업무관련성이 적은 일부위원을 위촉직으로 조정 정비 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변경 조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화물유통촉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로 한다.
- 제2조중 "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2조제9호중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기획관리실장, 경제과학국장, 교통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 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3. 물류정책·유통단지입지정책 또는 물류표준화추진정책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7조 각 호외의 부분중 "시장"을 "대전광역시장"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제10조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 제1조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한다.
- 제10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혅 행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 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항을 심의한다.
 - 1. ~ 8. (생략)
 - 9. 기타 물류산업발전을 위하여 대전 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② (생략)

-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 성하되 기획관리실장, 경제과학국장, 문화체육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환 경녹지국장, 교통국장, 도시건설방재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물류정책 · 유통단지입지정책 또 는 물류표준화추진정책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 다)에서 추천한 소비자 또는 시민대표

개	정	야
∕ ∏	ĺδ.	i.

세1조(국식)		
대전		
<u>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u>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 <u>원회(이하 "위원회"</u>라 한다)-----
 - 1. ~ 8. (현행과 같음)
 - 광역시장-----
 - **제3조(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기획관리실장, 경제과학국장, 교 통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 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3. 물류정책·유통단지입지정책 또는 물류표준화추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해촉) <u>시장</u> 은 다음 <u>각</u> <u>호의 1</u>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10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는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관계법규

□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물류정책위원회등) ①국가물류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물류시설등의 집단화
- 3.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 4. 물류표준화
- 5.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
- 6.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 육성
- 7. 물류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 8.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③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광역시의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 ⑤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 제3조(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등) ③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의장이 된다.
 -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 은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 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각계각층 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법령 및 타 조례에 규정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